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52588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화영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5.

판결 선고 2024. 11. 19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48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7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선택적으로,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48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별지 청구원인 중 '선택적 청구원인 1'을 받아들이는 이상, '선택적 청구원인 2'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.

판사김정철

별지